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8

발의연월일: 2020. 6. 16.

발 의 자:이용선·강병원·김경협

김두관 · 김철민 · 민홍철

오영환 • 윤후덕 • 정춘숙

한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산정근거,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, 현행법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지원계획, 등록금 의존율(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)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함.

한편 현재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'의 예방을 위하여 각 학교는 온라인 강의와 같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, 기숙사나 실습실과 같은 일 부 학교 시설 이용도 불가능한 상황임.

이처럼 재난 상황에 따라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졌음에도 등록 금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점은 불합리하며, 납부된 등록금 중 재난 상황을 반영하여 나타나는 등록금 축소분에 대하여는 학생들 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산정할 때 재난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 제한을 함께 감안하고, 학기가 시작된이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·감액 또는 환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금의 합리적 조정을 촉진하고자 함(안 제11조제5항,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 중 "말한다) 등을"을 "말한다)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이용 제약 등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2항(종전의 제10항) 중 "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,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 및 제9항의 행정적·재정적 제재 등"을 "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,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원회의 설치·운영, 제9항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제재 및 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·감액·환급 등에"로 한다.

- 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 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·감액 또는 환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금의 면제·감액 또는 환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① 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·감액 또는 환급의 비율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안 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 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 원회) ① ~ ④ (생 략) 원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는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특례법」 제6조제1항 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 인당 교육비 산정근거, 도시근 로자 평균가계소득, 제7조제3항 의 고등교육 지원계획, 등록금 의존율(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 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)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 -----말한다), 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하다.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 설의 이용 제약 등을-----⑥ ~ ⑨ (생 략) ⑥ ~ ⑨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

<신 설>

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, 제3
 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
 ·운영 및 제9항의 행정적・재
 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
 교육부렁으로 정한다.

시설의 이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·감액 또는 환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금의 면제·감액 또는 환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① 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・감액 또는 환급의 비율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,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원회의 설치・운영, 제9항에 따른 행정적・재정적 제재 및 제10

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・감

-----.

액•환급 등에----